

신용정보활용체제

금화저축은행(이하"당행")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며,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, 물리적, 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당행 신용정보활용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- (금융)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,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 등
- (금융)거래 관련 개인(신용)정보 조회
-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,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연구에 필요한 목적

2.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식별정보

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나. 신용거래정보

[개인]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
[기업]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라. 신용능력정보

- 개인의 직업·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마. 신용도판단정보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 어음·수표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정보 등
-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

바. 공공기록정보

- 체납정보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■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제공 대상

-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 1544-1040),
- 신용정보회사
 - NICE평가정보(주) (www.creditbank.co.kr 1588-2486),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 요구를 하는 공공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신용을 판단하거나,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개인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신용도판단정보
- 신용능력정보
-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

■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신용정보의 보유기간

- (금융)거래 종료일*로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 됩니다. (금융)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됩니다.
-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별도로 분리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 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* (금융)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 (여·수신, 내·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) 및 서비스(대여 금고, 보호예수, 외국환거래지정,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)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.

2. 파기절차 및 방법

-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 저축은행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지침 및 각종업무기준에 따라 파기합니다.
 - 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삭제합니다.
 - ②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■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[개인(신용)정보 취급위탁현황 바로가기]

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* 아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영업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본인신용정보 제공/열람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3.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

-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당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4. 개인신용정보 제공/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, 유·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5. 연락중지 청구권(두넛콜)

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6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선택적 정보, 5년이 경과한 필수적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.

7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

-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8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9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

- 개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고객은 본인 개인(신용)정보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』 따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NICE평가정보(주) : 02) 1588-2486 / www.mycredit.co.kr
서울신용평가정보(주) : 02) 1577-1006 / www.siren24.com
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: 02) 708-1000 / www.kcb4u.com

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-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		연락처	주소
신용정보관리·보호인	이사 이강주	032-452-6050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07
신용정보관리 담당자	과장 박구슬	032-452-6051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07